군포도시공사 제4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「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」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2024년 8월 19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33 호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할 때

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임신 중인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	관 부 서	경 영 기 획 실
임	직 위	경 영 기 획 실 장
	성 명	이 현 동
안	직 위	인 사 총 무 팀 장
	성 명	신 재 두
자	담당자 성명	문 원 미
	(전 화)	(390-764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공가) 직원이 다음 각 호	제32조(공가)
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	
기간 중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	
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0조
	및 제131조에 따라 건강진단
	<u>을 할 때</u>
제35조(특별휴가) ① ~ ④ (생 략)	제35조(특별휴가) ① ~ ④ (현행
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임신 중인 직원은 1일 2시간
	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
	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
	<u>받을 수 있다.</u>

[관계법령]

1. 산업안전보건법

제130조(특수건강진단 등)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(이하 "특수건강진단"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 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- 1.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(이하 "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"라 한다)에 종사하는 근로자
- 2. 제1호,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「의료법」 제2 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
-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(이하 "배치전건강진단"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(이하 "수시건강진단"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·주기·항목·방법 및 비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31조(임시건강진단 명령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(이하 "임시건강진단"이라 한다)의 실시나작업전환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.

2.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6(공가)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(제10호의 경우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.

- 1. 「병역법」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·소집·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
- 2. 공무에 관하여 국회, 법원, 검찰, 경찰,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
- 3.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
- 4. 승진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
- 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

<후단 생략>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7. 4. 25., 2021. 11. 30.>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)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14. 6. 30., 2021, 11, 30., 2021, 12, 31.>
- 1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 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.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)·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
- 2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
- 3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·사산 또는 조산(早産)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
-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4. 6. 30., 2019. 12. 31.>
- 1.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- 2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- 3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- 4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1., 2021. 11. 30.>
-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8., 2019. 12. 31., 2021. 12. 31.>
- 1. 여성공무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
- 가.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2일(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, 시술일 후 2일 이내이 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)
- 나.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3일(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,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)
- 다.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4일(난자 채취일에 1일,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, 난자 채취일 전날, 시술일 후 2일 이내,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)
- 2. 남성공무원: 정자 채취일에 1일
-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13. 5. 31., 2018. 12. 18., 2019. 12. 31.>

<후단 생략>

[참고사항]

□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보도자료(2018. 1. 16.)

보도 자료 하나된 열정하나된 대한민국 보도일시 2018년 1월 16일(화) 석간(1.16.(화) 오전 10시)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.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정지만(044-201-8440) 사무관 고유성(044-201-8444)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장 박순영(02-2100-3440) 사무관 이영수(02-2100-3437)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장 김정기(02-2100-4410) 서기관 홍신애(02-2100-4402)

- □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·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.
 - * <불임 2>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
 - 임신한 경우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'모성보호시간'을 확대하고,
 - * (현행) 태아,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 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 → (개선)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

불임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

- □ 모성보호시간 확대 (복무규정 개청, '18.1월 입법예고 예정)
- (현행)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
- (개선)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1일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